

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우리구의 괴정2동 및 장림1동사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“괴정제2동” 위치를 “괴정동 354-22” 로하며, “장림제1동” 위치 “장림동 1140” 으로 함.

3. 관련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6조(사무소의 소재지)

나. 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(소재지)

4. 검토의견

-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괴정2동 및 장림1동사의 신축이전에 따른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서
- 괴정2동사는 1,032,000천원(토지매입비 581,000천원, 신축공사비 451,000천원)의 예산을 투입 2002. 1. 31 착공하여 2002. 5. 20일 준공 하였으며, 지난 6. 5일이전개소 하였고
- 또한 장림1동사도 545,000천원(토지: 매립지, 신축공사비 545,000천원)의 예산을 투입 2001. 12. 21 착공하여 2002. 5. 20 준공 하였으며, 지난 6. 4일이전개소 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2002. 7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 삼 립